

## 중국 전자서명법의 주요내용 및 평가와 전망

한상현\*

### 목 차

- I. 머리말
- II. 주요국의 전자서명법 입법동향과 인증기관 및 법적 효력
- III. 중국 전자서명법상 데이터 메시지와 전자서명
- IV. 중국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인증과 법적 책임
- V. 맺음말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 I. 머리말

최근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중국에서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증가되어 가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는 현재 4000개 이상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및 70개 회사 이상의 전자상거래 인증기관(CA: Certificate Authority)이 있으며, 2003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자상거래 총액은 6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에 관한 법적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1995년 이후 歐美나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제국도 전자서

명 및 전자인증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sup>2)</sup>

이에 따라 중국에 있어서도 최근 전자서명법의 입법 작업이 급속히 추진된 결과, 2004년 8월 28일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1차 회의에서 “전자서명법(中華人民共和國 電子簽名法)”이 전격 통과·공포되었고 이는 2005년 4월 1일부터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정식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법에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정해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전자서명을 수기의 서명이나 압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sup>3)</sup> 2005년 4월부터 전자서명이 오프라

2) 일본에서는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102호)”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것에 의해 전자서명이 수기의 서명 또는 압인과 동등하게 적용하는 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고, 또 인증업무에 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본의 전자서명법의 개요에 관해서는 법무성 민사국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www://www.MOJ.GO.JP/MINJI/minji32.html).

3) 한국관세무역연구원, 해외 관세무역 동향, 관세와 무역,

\* 남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

1) 天極網, 電子書名法 評論, 2004. 9. 8.

인상에서의 자필 사인이나 인감도장과 같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전자결제나 기타 전자상거래 전반에 관한 법 규제는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는 장래의 중요한 입법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는 전자서명법이 정착·보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는 가운데, 어느 면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등과 동일하게 전자상거래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비례하여 전자서명의 위조나 변조 등의 법적 문제들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통상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분쟁 또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을 통해 중국 역사상 최초로 입법된 전자서명법의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데이터 메시지와 전자서명, 전자인증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함께 법적 책임을 규명한 후 우리의 시각에서 이들의 내용들을 평가함과 아울러 향후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 II. 주요국의 전자서명법 입법동향과 인증기관 및 법적 효력

최근 미국, 독일, 일본과 한국 등 주요 국가들과 UNCITRAL 등 국제기구들이 제정·시행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의 입법동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 주요국가 및 기구의 입법동향

### 2.1.1. 주요국가의 입법동향

국가	동향
미국	대부분 주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연방차원에서 2000년 '국제 및 국내 전자상거래에서의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음. ※ 메사추세츠주와 콜롬비아특별구는 미 제정함.
싱가포르	비대칭 암호화방식의 디지털서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거래기본법을 1998년에 제정하였음.
독일	'디지털서명에 관한 법률'을 1997년에 제정·시행했으며, 2001년에는 유럽연합 전자서명지침에 합치되도록 이를 개정하였음.
일본	2000년도에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1년 4월부터 이를 시행하였음.
오스트리아	유럽연합 전자서명지침을 수용하여 1999년에는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음.
호주	2000년 전자서명 및 전자계약의 유효성 등을 포함한 전자거래법을 제정하였음.
한국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정보보호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999년 2월에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음. 제정된 뒤 2001년 12월 법률 제6585호, 2005년 12월 법률 7813호 등의 개정이 있었음.

### 2.1.2. 주요 국제기구의 입법동향

UN 국제무역법위원회 (UNCITRAL)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는 전자서명법 모델법을 제정하였고 각국의 전자서명법 제정·개정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가이드도 마련중에 있음.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1999년 12월에 '전자서명지침'을 제정하였고, 인증기관의 자격인정, 인증기관의 책임에 관한 통일적 규칙 마련, 전자서명의 사법상 및 소송법상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2.2. 주요국가 및 기구의 전자서명법에서 인증기관의 허가

### 2.2.1. 개요

미국 유타주 전자서명법(1995년), 독일 전자서

명법(1997년) 및 한국 전자서명법(1999년) 등과 같은 초기 입법례는 인증기관을 허가하거나 지정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하였다. 그러나 일본 전자서명법(2000년), 미국 연방전자서명법(2000년), 독일 개정법(2001년) 등과 같이 최근에 제정·개정된 입법례에서는 공인인증기관 허가제도를 완화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 2.2.2. 각국의 입법례

### 1) 미국

미국의 연방 전자서명법에서는 인증기관의 허가·감독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각 주의 전자서명법에서 규율하고 있다.<sup>4)</sup> 유타, 워싱턴, 네바다, 캘리포니아 및 텍사스주 등은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기타 주에서는 등록제 등 완화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Entrust Technologie, Baltimore Technologies, Digital Signature trust Company, Verisign, Arcanvs Inc, ID Certify Inc 등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 2) 독일

독일의 경우 1997년에 제정된 디지털서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증업무를 신뢰성 요건을 구비한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허가하여 주는 허가제를 채택하였으나, 최근 법개정(2001)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인증기관은 주무관청에 신청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확인필증을 교부해 주는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정제도의

도입으로 전자서명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확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법률관계에서 전자서명이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독일에서는 도이치텔레콤, DATEV AG 등 6개 기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허가를 받았고, Steuerberaterkammer Saarland Hanseatische, Steuerberaterkammer Bremen 등 2개 기관이 확인필증을 교부받아 인증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 3) 일본

일본의 경우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한 허가제 등과 같은 규제는 원칙적으로 없다. 대신에 특정 인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인증업무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 VeriSign, 일본인증서비스, 일본 벌티모어 테크놀로지 및 세콤 트러스트네트 등이 특정인증업무를 인정받은 상태이다.

### 4) 싱가포르

싱가포르 전자거래법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의 허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위법령인 인증기관규정을 제정하여 인증기관을 허가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ID.safe Pte Ltd가 인증허가를 받아 인증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 5)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경우 인증기관의 일반적인 인증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는 필요 없다. 다만, 인증기관은 업무를 개시할 때에 인증설비 및 업무 수행방법 등을 신고해야 하며 업무수행 중에도 이러한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은 주무관청에 신청하여 법령이 정한 안

4) 유타주 등 초기 입법례는 인증기관의 허가제를 도입하였으나,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제정 작업의 영향을 받은 주에서는 허가 제도를 완화하는 경향이다.

전한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요건을 준수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만일 지정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안전한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한다. 현재 오스트리아의 경우 지정 받은 인증기관은 없으며, Datakom Austria GmbH 등 7개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 6) 호주

호주의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허가제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단지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전자서명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 기타 공공부문에서의 전자서명정책인 Gatekeeper 계획으로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Baltimore Certificates Australia, eSign Australia Ltd. 등 4개 인증기관이 지정을 받았으며, 13개 업체가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신청 중에 있다.

### 7) 한국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인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5)</sup> 다만, 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하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공인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sup>6)</sup> 공인인증기관은 인증

업무준칙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sup>7)</sup>

## 2.3.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부여에 대한 각국동향

### 2.3.1. 개요

미국 유타주 및 한국 전자서명법 등 초기 입법례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한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였으나, 최근 입법례에서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안전한 전자서명에 대해서도 민사법상의 수기서명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sup>8)</sup>

### 2.3.2. 각국의 입법례<sup>9)</sup>

#### 1) 미국

미국의 연방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으로 서명한 모든 전자계약 및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유효성 또는 집행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주의 전자서명은 공인인증기관이 인정한 전자서명 또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안전한 디지털서명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6) 한국 전자서명법 제6조

7) 한국 전자서명법 제10조

8) <http://blog.naver.com/f405/100010745194>

9) <http://blog.naver.com/f405/100010745194>

5) 한국 전자서명법 제4조

## 2) 독일

독일 전자서명법에는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으며, 독일 민법에 있는 수기 서명된 문서의 진정성립추정 규정에 따라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제정법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디지털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서명이 민법상 수기서명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개정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공인전자서명에 대해 수기서명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공인전자서명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다.

## 3) 일본

일본의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요건 즉, 첫째, 전자서명에 필요한 부호(비밀키), 물건(IC카드) 등 전자서명 생성정보나 저장장치가 본인에 의해 적절하게 관리될 것 둘째, 본인 자신만이 서명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전자문서에 서명될 것 셋째, 디지털 정보에 전자서명을 한 자가 당해 디지털 정보의 작성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넷째, 디지털 정보가 전자서명된 후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을 구비한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 4)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법률은 법률에 수기서명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모든 전자서명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정하는 안전한 전자서명의 요건을 구비하거나 디지털서명이 있는 경우 당해 서명이 서명자의 서명이라는 것과 전자문서를 서명하거나 승인하는 의

사를 지닌 자에 의해 첨부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 5)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경우 모든 전자서명은 다음 사항 즉, 첫째,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 둘째, 인증기관이 발급한 적정한 인증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셋째, 법령이 정한 인증설비 및 인증업무 수행방법에 따라 생성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법적 효력과 거증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한 전자서명은 민사법에서 정한 수기서명의 효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6) 호주

호주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은 서명요건을 충족하는 법률효과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이 특별한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0)</sup>

## 7) 한국

한국은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11)</sup> 또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하며,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http://www.patentmap.or.kr>

11) 한국 전자서명법 제4조

### III. 중국 전자서명법상의 데이터 메시지와 전자서명

#### 3.1. 중국 전자서명법의 제정배경

중국이 전자서명법을 도입하게 된 궁극적인 배경은 전자정부의 구현촉진이라는 목표 이외에도 전자상거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 거래당사자의 합법적 이익 보호, 거래의 안전성 보장, 전자상거래 발전에 필요한 환경조성 등 현실적 문제 외에 최근 중국국내에서 전자상거래 판매방식의 급증, 시장규모의 확대 및 온라인 범죄의 증가, 그리고 중국전자상거래시장의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거센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판매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sup>12)</sup>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인구 10,000만명 가운데 약 40.7%가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사거나 팔고 있으며,<sup>13)</sup> 이에 따라 각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전자상거래 판매대행을 희망하는 신청자들이 한달 평균 수십여 개 업체에서 최근에는 4,000여개 업체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둘째, 최근 중국에 있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보산업분야 전문 조사기관인 CCID에 따르면 2003년 전자상거래 규모는 2,756억위엔(약 41조 2,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3% 늘었고, 2004년도는 4,000억위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정

보통신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8억위안(元, 3조 520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여기에 증권사이트의 거래량이 최근 누계 1조위안(140조원)을 돌파하여 전자서명법의 필요성을 절감케 만들었다.

셋째, 중국에서 전자상거래규모의 증가는 온라인 범죄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베이징에서만 최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틈탄 온라인 범죄가 매년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현실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입법추진이 지연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로 작용하였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판매방식과 시장규모의 급증에 따라 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sup>14)</sup>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아마존은 2003년 8월 7,5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중국의 대형 온라인 도서판매업체인 쥐위예왕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또한 세계 최대의 C2C(개인간) 거래사이트인 이베이와 야후,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업체인 IAC 등이 B2B(기업간), B2C(기업대 개인간), C2C 등의 분야에 각각 진출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인터넷 거래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은행 현금카드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의 우려가 높았다. 따라서 전자서명법은 온라인 거래시 비밀번호나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향후는 본인의 서명이나 온라인 도장, 본인의 소리·지문 등 전자서명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sup>15)</sup>

12) 서울경제 2004-09-19 17:12

13) 디지털타임스 2004-09-08 10:59

14) [http://www.news.searchina.ne.jp/2004/0826/politics\\_0826\\_001.shtml](http://www.news.searchina.ne.jp/2004/0826/politics_0826_001.shtml)

15) <http://blog.naver.com/pjeunhae/140008826260>

### 3.2. 중국 전자서명법의 구성과 적용범위

중국의 전자서명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데이터 메시지 제3장 전자서명과 인증 제4장 법률적 책임 및 제5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35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본 법률은 물, 난방, 가스, 전기공급정지에 관련한 공공사업서비스는 당해 법률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그외 혼인, 입양, 계승 등 신분 관련,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권익 양도 관련한 전자서명에도 적용되지 않는다(제2조).<sup>16)</sup>

### 3.3. 총칙

신설된 중국 전자서명법의 주요 요점은 첫째,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수기의 서명이나 압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 둘째,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의 조건 등을 정한 것 등 2가지라 할 수 있다. 이하 전자서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7)</sup>

#### 3.3.1. 용어의 정의

중국의 전자서명법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 아래의 표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sup>18)</sup>

용어	정의
전자서명	데이터 메시지 속에 전자형태로 포함되어 있거나 첨부되어 있어, 서명자의 신분식별에 사용되거나 서명자가 그 속의 내용을 인식한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
데이터메시지 <sup>19)</sup>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유사의 수단으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보존된 정보
전자서명자	전자서명작성 데이터를 소지하거나 본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의 명의로 전자서명을 행한 자
전자서명의뢰자	전자서명인증중서 또는 전자서명에 대한 신뢰에 따라 관련활동에 종사하는 자
전자서명인증중서	전자서명자와 전자서명 작성 데이터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 또는 기타의 전자기록
전자서명작성 데이터	전자서명의 과정에서 사용되어 전자서명과 전자서명자를 확실하게 관련시키는 캐릭터나 코드 등의 데이터
전자서명검증 데이터	전자서명의 검증에 사용되는 데이터(코드, 패스워드, 알고리즘 또는 공개건(비밀번호)을 포함)

#### 3.3.2. 전자서명 및 데이터 메시지사용의 자유 및 법적 효력

민사활동에서 계약 혹은 기타의 서류나 증표 등의 문서에 대해, 전자서명 혹은 데이터 메시지를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자의 자유에 달려 있다.<sup>20)</sup>

다만, 당사자가 전자서명이나 데이터 메시지를 사용할 것을 약정한 문서의 경우는 서면문서와 동일하게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제3조 2항)<sup>21)</sup>. 그러나 ① 혼인, 입양 및 상속 등의 신분관계와 관련된 것 ② 토지, 가옥 등의 부동산권익의 양도와 관련된 것 ③ 물, 열, 가스 및 전기공급 등의 공익사업서비스와 관련된 것 ④ 법률이나 행정규에 데이터 메시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기타의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sup>22)</sup>

한편 전자서명법의 입법과정에서 전자서명법

16) <http://www.tlbs.co.kr/infoBBS/view.htm?pubKindId=1&pubId=446>

17) 遠藤誠, “中國の電子署名法の制定”, 『國際商事法務』, Vol.32, No.10, 2004, pp.1384-1587.

18) 중국 전자서명법 제2조, 제34조

19) 전자서명법 원문에는 이를 “數據電文”으로 표시하고 있다.

20) 중국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21) <http://china-law.cocolog-nifty.com/chinalaw/2004/08/>

22) 중국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

을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뿐 만 아니라 전자행정서비스에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관하여 논의된 바 있었지만, 결국 전자행정서비스의 적용은 이번 신설규정에서는 이를 배제시키고, 별도의 법률 및 행정법규를 가지고 구체적인 전자행정서비스에 전자서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3.4.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

#### 3.4.1. 데이터 메시지의 조건

데이터 메시지가 본 법령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면형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재내용을 유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수시로 읽어내고 조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된다.<sup>23)</sup>

또 데이터 메시지가 법령에 정한 원본형식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① 기재내용을 유효하게 표현할 수 있고, 수시로 읽어내어 조사 및 사용할 수 있을 것(즉, 언제 어디서나 검색이 가능한 경우) ② 최종적으로 작성된 시점에서 내용을 완전하게 유지하고,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을 것<sup>24)</sup>의 2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sup>25)</sup>

또한 데이터 메시지가 법령에서 정한 문서보존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위해서는 ① 기재내용을 유효하게 표현할 수 있고 수시로 읽어내어 조사 및 사용할 수 있을 것 ② 데이터 메시지의 서식이 그 작성, 송신 또는 수신시의 서식과 동일하거나 혹은 서식은 다르지만 본래 작성, 송신 또는 수신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③ 데이터 메시지의 송신자, 수신자 및 송신, 수신시간을 식별할 수 있을 것

의 3가지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sup>26)</sup>

#### 3.4.2. 데이터 메시지의 증거능력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메시지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메시지의 증거로서의 사실성을 심사하는 경우는 ① 데이터 메시지(데이터전자문서)의 작성(생성), 보존(저장) 및 전송방법의 신뢰성 ② 내용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방법의 신뢰성 그리고 ③ 송신자(문건서명인)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의 신뢰성 등이 고려된다.<sup>27)</sup>

#### 3.4.3. 데이터 메시지의 송수신

중국 전자서명법은 데이터 메시지의 송수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송신	수신
송수신의 인정기준	데이터 메시지가 ① 송신자의 수권을 거쳐 송신된 경우 ② 송신자의 정보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송신된 경우 ③ 수신자가 송신자가 인정한 방법에 따라 데이터 메시지를 검증하고, 결과가 일치된 경우의 어느 쪽에 해당할 것(제9조)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혹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데이터 메시지가 수령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송신자가 수신자의 수명확인을 수취한 것(제10조)
송수신의 시기	데이터 전자문서(메시지)가 송신자(발신인)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시점(제11조 1항)	① 수신자가 특정의 시스템을 지정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 데이터 메시지가 당해 시스템에 들어간 시간 ② 특정의 시스템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의 어느 쪽의 시스템에 최초로 있던 시간(제11조 2항)
송수신의 지점	송신자의 주된 영업장소(또는 통상의 거주지)(제12조 1항)	수신자의 주된 영업장소(또는 통상의 거주지)(제12조 2항)

23) 중국 전자서명법 제4조

24) 다만, 데이터 메시지 상으로 배서추가 및 데이터교환, 보존과 표시프로세스에서 발생한 형식의 변화는 데이터 메시지의 완전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5) 중국 전자서명법 제5조

26) 중국 전자서명법 제6조

27) 중국 전자서명법 제7조 및 제8조



### 3.5.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전술과 같이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다”<sup>28)</sup>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14조에 의해 수기의 서명이나 압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sup>29)</sup>

다만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① 전자서명 작성데이터가 전자서명에 사용된 때에 전자서명자의 專有로 속할 것 ② 서명할 때, 전자서명 작성데이터가 전자서명자만으로 제어되어 있을 것 ③ 서명 후 전자서명의 어떠한 변경에 대해서도 발견될 것 ④ 서명 후의 데이터 메시지의 내용 및 형식의 어떠한 변경에 대해서도 발견될 것의 각 요구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은 그 약정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조건에 일치하는 전자서명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sup>30)</sup>

이와 같이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의 종류를 법에 의해 한정하지 아니하고 “기술중립원칙”에 입각하여 장래의 기술혁신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의 전자서명의 합법성을 승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 작성 데이터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서명자가 전자서명작성 데이터의 비밀이 이미 누설되었거나 혹은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곧 통지함과 아울러 당해 전자서명작성 데이터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sup>31)</sup>

28) 전자서명법 원문에는 이를 “可靠的”으로 표현하고 있다.

29) <http://washingtontimes.com/upi-breaking/20040828-045733-467Or.htm>

30) 중국 전자서명법 제13조 제2항

31) 중국 전자서명법 제15조

## Ⅳ. 중국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인증과 법적 책임

### 4.1. 전자인증

#### 4.1.1.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Providers)

##### 1)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의 조건

전자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① 전자인증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자 및 관리자(관리인력)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전자인증서비스의 제공에 상응하는 자금 및 영업장소(경영장소)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③ 국가의 안전기준에 합치하는 기술 및 설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 ④ 국가의 암호관리기관이 암호의 사용에 동의하는 취지의 증명서를 취득할 것 ⑤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타의 조건의 각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sup>32)</sup> 현재 중국에는 80개 단체이상의 전자인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지만, 그중 대다수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을 받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지적되고 있다.

##### 2)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가 되기 위한 절차

전자서명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자인증 서비스 제공자가 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무원의 정보산업주관부서에 신청하고, 전자서명법 제17조에 규정된 조건에 충족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국무원의 정보산업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후, 법에 따라 심사하고, 국무원의 상무주관부서 등의 관련부문에 의견을 구한 후,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허가 혹은 불허가

32) 중국 전자서명법 제17조

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허가하는 경우는 전자인증 허가증서를 교부되며,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제18조 1항).

신청자는 교부받은 전자인증 허가증서를 지참하고 법에 따라 工商행정관리부서에서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 기업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또한 인증자격을 취득한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는 국무원의 정보산업주관부서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인터넷상으로 그의 명칭 및 허가증서 번호 등의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sup>33)</sup>

### 3)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는 ① 책임범위, 작업조작규범, 정보보안대책 등의 사항을 정한 전자인증업무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또한 국무원의 정보산업주관부서의 의무(제19조)를 이행함과 아울러 ② 전자서명 인증증서의 내용이 유효기간 내에 완전하며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서명의 의뢰자가 전자서명 인증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기타 관련사항을 확인하거나 혹은 이해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의무(제22조)도 부담하게 된다.

#### 4.1.2. 전자서명 인증증서

##### 1) 전자서명 인증증서의 신청과 관련된 의무

전자서명자는 전자서명 인증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사실적이며 완전하고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는 전자서명 인증증서의 신청을 수령한 후, 신청자의 신분을 조사·확인하고, 관계 자료를 심사하여야 한다.<sup>34)</sup>

##### 2) 전자서명 인증증서의 기재사항

전자서명 인증증서에는 ㉠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의 명칭 ㉡ 증서소지자의 명칭 ㉢ 증서의 일련번호 ㉣ 증서의 유효기간 ㉤ 증서소지자의 전자서명인증 데이터 ㉥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의 전자서명 ㉦ 기타 국무원의 정보산업주관부서가 정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sup>35)</sup>

##### 3) 국외에서 발행된 전자서명 인증증서의 법적 효력

국무원의 산업정보주관부서에 의한 심사확인<sup>36)</sup>을 거친 경우, 국외의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가 국외에서 발행하는 전자서명 인증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중국에서 설립된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가 발행하는 전자서명 인증증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제26조).<sup>37)</sup>

## 4.2. 법적 책임

### 4.2.1. 전자서명자의 책임

전자서명자가 전자서명작성 데이터의 비밀이 이미 누설되었거나 혹은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각 관계당사자에게 곧 고지하지 않거나, 전자서명 작성데이터의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에게 사실적이며 완전하고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기타 과실이 있거나 전자서명의 의뢰자,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sup>38)</sup>

33) 중국 전자서명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4) 중국 전자서명법 제20조 제1항 및 제1항

35) 중국 전자서명법 제21조

36) 전자서명법 원문에는 “核准”으로 표현되어 있다.

37) 遠藤誠, 前掲論文, pp.1384-1587.

38) 중국 전자서명법 제27조

4.2.2.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전자서명자 또는 전자서명의뢰자가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된 전자서명 인증서비스에 따라 민사활동에 종사하여 손해를 입거나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sup>39)</sup>

즉, 본 법률에서는 전자서명인<sup>40)</sup> 혹은 전자서명 의뢰측이 전자인증서비스 제공자의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여 민사활동 진행 중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 전자인증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무과실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sup>41)</sup> 통상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기와 같이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전가되게 된다.

이외에도 전자서명법에는 기타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로 전자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제29조)<sup>42)</sup> ② 전자인증서비스의 일시중지 및 종료를 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제30조)<sup>43)</sup> ③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가 확인업무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인증에 관련하는 정보를 적절하게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타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제31조)<sup>44)</sup>의 법적

책임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4.2.3. 타인의 전자서명을 위조 등을 한 자의 책임

타인의 전자서명을 위조하거나 도용(冒用) 또는 표절하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며, 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제32조).<sup>45)</sup>

V. 맺음말 ~평가와 전망~

이상에서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전자서명법의 주요내용 중 데이터 메시지와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과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본법의 제정이 갖는 의의와 향후에 미칠 본 법의 영향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평가하고 전망하고자 한다.

첫째, 본법의 요점은 전자서명을 온라인쇼핑 등에서 법적효력 지닌 일종의 신분증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이를 중국 정부가 전자서명과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sup>46)</sup> 따라서 중국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필수 요소인 전자서명법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입법화된 것을 계기로 침체상태에 빠졌던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sup>47)</sup>

39) 중국 전자서명법 제28조

40) 전자서명인이란 전자서명제작데이터를 보유하는 또한 본인의 신분 혹은 관련대표자의 명의로 전자서명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전자서명법 제 제34조 제1항).

41) <http://www.tlbs.co.kr/infoBBS/view.htm?pubKindId=1&pubId=446>

42)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인증 서비스업무에 종사할 경우 국무원정보산업주관부서에서 위법행위 정지를 명하며,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위법소득액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소득이 30만위엔 이상일 경우는 소득의 1-3배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위법)소득이 30만위엔 미만일 경우는 10-30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43) 전자인증서비스공급자가 전자인증서비스를 잠시 중단하거나 종료하고자 할에도 불구하고 종료하기 전60일 전에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서는 관련 책임자에게 10-30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44) 전자자인증 서비스제공자가 인증확인업무규칙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거나 인증에 관련하는 정보를 적절하게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타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지시한다. 기한이 지났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자인증허가증을 회수하며 담당인력 또는 기타 직접 책임자는 10년 동안 전자인증서비스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45) 遠藤誠, 前掲論文, pp.1384-1587.

46)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 법률의 통과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정보화 법률이 탄생했다며 앞으로 전자서명이 인터넷 신분증구실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4.08.29).

47) [http://www.people.ne.jp/2004/12/22/jp20041222\\_46268.html](http://www.people.ne.jp/2004/12/22/jp20041222_46268.html)

또한 본법에서는 전자서명이 온라인상에서 자필사인이나 인감도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인증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승인제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전자인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의 전자서명법 제정은 중국 정부가 소규모 상거래와 전자상거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치로서, 전자서명법에 의해 정해진 일정요건을 충족한 전자서명을 수기의 서명이나 압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와 함께 전자서명을 인증할 기구도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중국 인터넷 사용인구는 8700만을 넘어섰으나 저조한 신용카드 사용률과 온라인 지불시스템 및 법적시스템의 미비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속도는 더딘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닷컴이 중국 최대 온라인 서점인 조요닷컴을 인수하고, e베이도 중국 온라인 시장진출을 모색하는 등 외국 기업의 투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sup>48)</sup>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번에 제정한 전자서명법이 온라인 시장 성장세를 더욱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sup>49)</sup>

셋째, 상호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전자상거래의 성질상 중국의 경우 이로 인한 분쟁이 해마다 수만 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번 전자서명제도의 입법으로 앞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각종 분쟁과 관련한 법

적 분쟁은 상당한 규모로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넷째, 전자서명법의 제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배워가는 중국의 사회·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정부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 훈련과정에서 전자문서 인증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없던 전자상거래학과가 최근 120여 학교에 개설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섯째, 중국 전자서명법 제26조에는 일정조건을 갖춘 해외의 인증기관이 중국에서 인증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해외인증기관의 중국내 서비스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sup>50)</sup> 즉, 중국 내에도 많은 인증기구 혹은 업체가 있지만 기술력이나 경험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인 상황에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해외 업체가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사설인증기관 및 공개키기반구조(PKI) 인증 솔루션업체들의 중국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가 원칙적으로는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자격요건에 대한 세부 규칙이 정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의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전자상거래 문제 발생 시 배상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기업, 그리고 고정된 사무실, 자격을 갖춘 관리자, 안전보장 등이 가능한 기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중국진출희망기업들은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8) <http://www.cnkr21.com/guanggao/gg/98/10.htm>

49) <http://www.internetweek.com/breakingNews/showArticle.jhtml?articleID=46200171>

50) <http://blog.naver.com/indostatin/8324830>

## 참고문헌

- 디지털타임스 2004-09-08 10:59  
서울경제 2004-09-19 17:12  
遠藤誠, “中國の電子署名法の制定”, 『國際商事法務』, Vol.32, No.10, 2004.  
天極網, 「電子書名法 評論」, 2004. 9. 8.  
한국관세무역연구원, “해외 관세무역 동향”, 『관세와 무역』, 2004. 5.  
<http://blog.naver.com/f405/100010745194>  
<http://blog.naver.com/indostatin/8324830>  
<http://blog.naver.com/pjeunhae/140008826260>  
<http://china-law.cocolog-nifty.com/chinalaw/2004/08/>  
<http://washingtontimes.com/upi-breaking/20040828-045733-4670r.htm>  
<http://www.internetweek.com/breakingNews/showArticle.jhtml?articleID=46200171>  
[http://www.news.searchchina.ne.jp/2004/0826/politics\\_0826\\_001.shtml](http://www.news.searchchina.ne.jp/2004/0826/politics_0826_001.shtml)  
<http://www.patentmap.or.kr>  
[http://www.people.ne.jp/2004/12/22/jp20041222\\_46268.html](http://www.people.ne.jp/2004/12/22/jp20041222_46268.html)  
<http://www.tlbs.co.kr/infoBBS/view.htm?pubKindId=1&pubId=446>  
[WWW://WWW.MOJ.GO.JP/MINJI/minji32.html.](http://WWW.MOJ.GO.JP/MINJI/minji32.html)

## The Main Character and Evaluation of China's New Electronic Signature Legislation

Sang-Hyun Han\*

### Abstract

China has recently (28 August 2004) adopted a new act legalizing the electronic signature. This new act provides electronic signatures with the same legal status as handwritten signatures, and states that on-line certification providers will have to be created in order to ensure the security of on-line operations made using said signatures. This new act is intended to increase Chinese electronic business, and thus to raise the revenue China can expect from said business. And the law grants electronic signatures the same legal effect as handwritten signatures and seals in business transactions, and sets up the market access system for online certification providers to ensure the security of e-commerce. As Internet trade requires a reliable third party to identify the signers, the credibility of online certifying organizations is significant for the transaction security. So, considering the weakness of China's social credibility system, the law regulates that the online signatures certification providers should be approved and administered by governments.

Key Words: Electronic Signatures, E-Commerce, Electronic Certification, China's Law

---

\* Professor, School of Global Business, Namseoul University